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9. 21 선고 2022가단11009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C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경옥

변 론 종 결 2023. 7. 13.

판 결 선 고 2023. 9. 21.

주 문

-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2 근저당권에 관하여,
가. 주식회사 D과 피고 B 사이에 2021. 8. 5. 체결한 확정채권양도계약은 17,457,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B은 주식회사 D에게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8. 6. 접수 제163382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 중 채권최고액 17,457,000원의 한도 내에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2020. 11. 30. 16,357,000원 상당의 의류 제품을, 2020. 12. 31. 1,100,000원 상당의 의류 제품을 각각 공급하였으나, 소외 회사로부터 그 대금 합계 17,457,000원(=16,357,000원+1,1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2)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 소외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피고를 상대로 손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이 법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하여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7,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하여 202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 및 소외 회사가 위 결정에 대해 이의를 하지 않아 위 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1).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근저당권 이전등기

(1) 소외 회사는 E 소유의 별지 목록 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별지 목록 2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던 중, 2021. 8. 5. 확정채권양도(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를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등기국 2021. 8. 6. 접수 제163382호로 피고 앞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라 한다).

다.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2020.경 당시 이미 자산 총계 4,353,730,000원, 부채 총계 5,035,045,000원으로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 681,315,000원에 이르고 있었고, 2020.경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187,764,000원,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252,257,000원이었으며, 2022. 4. 30. 폐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사해행위의 성립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양도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하여 물품대금 17,45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적법한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소외 회사의 2020.경 당시의 재무 현황 및 이익 상태와 2022. 4. 30. 폐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를 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줄 당시에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확정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채무자인 소외 회사와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소외 회사의 사업이 어려워 2016.경부터 그 대표이사 C의 부모인 피고 등 가족들로부터

돈을 빌렸고 2020.경 자금이 더 필요하여 가족들로부터 3억 원을 더 빌렸으며 2021.경 가족들로부터 추가로 5,000만 원을 빌리면서 가족들을 대표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것이고 그 당시 소외 회사도 새로 런칭한 브랜드의 반응이 좋아 일시적 자금난만 해결하면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는데 2021. 10.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대출에 실패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였던 것으로서 소외 회사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할 목적이 아니라 추가적인 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로해준 것이므로 소외 회사에게는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다12004 판결).

을나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 대표이사 C의 부모(피고, F) 및 G 등은 2016.경부터 2021.경까지 소외 회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수억 원 상당의 많은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2021. 8.경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그와 같은 상태에서 약 6년 전부터 발생한 피고 등에 대한 많은 채무 및 추가적인 차용금 채무를 변제 내지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로 인하여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하게 할 수 없게 되리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 F, 딸 G와 함께 딸 C이 대표이사로 있는 소외 회사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많은 돈을 대여하였다가 소외 회사로부터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2021. 8. 2. 추가로 5,000만 원을 대여한 후 위 대여금 전체에 대한 담보 내지 변제조로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소외

회사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가족들을 대표한 피고 앞으로 이 사건 채권양도를 통해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던 것이고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 의하여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51908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C의 부(父)로서 밀접한 가족관계에 있었으므로 소외 회사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 F, 딸 G와 함께 소외 회사 또는 C에게 경영자금으로 장기간 계속적으로 많은 돈을 대여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로서도 소외 회사의 경영상황 및 채무초과상태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근저당권은 소외 회사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가사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액수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증여가 아닌 채권의 일부 담보 내지 변제조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소외 회사 및 피고의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행위는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다른 일반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통모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한 점2), ④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악의의 추정을 반복하고 선의인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채권양도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17,457,000원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

이 사건 채권양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로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는 이상,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는 피보전채권의 한도 내에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소외 회사에게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의 이 사건 근저당권이전등기 중 원고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 채권최고액 17,457,000원의 한도 내에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철환

별지

부동산 및 근저당권의 표시

1.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H에 있는 I건물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성북구 J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8층 K호

철근콘크리트구조 166.8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서울특별시 성북구 H 대 12,694㎡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2,694분의 36.08

2. 근저당권의 표시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년 4월 6일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서울북부지방법

원 등기국 2020년 4월 29일 접수 제101396호로 마쳐진 채권최고액 500,000,000원,

채무자 L,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로 된 순위번호 제10번의 근저당권 끝.

1)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대해서도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있었으나 피고가 이의를 하였다.

2) 채무자가 특히 일부의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이는 수익자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 수익자가 채무자로부터 변제 내지 채권양도를 받은 액수 및 양도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액수,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변제능력 및 이에 대한 수익자의 인식, 변제 전후의 수익자의 행위, 그 당시의 채무자 및 수익자의 사정 및 변제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3다60822 판결 등 참조).